

2020년도 제3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1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p><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01건(안건번호 제2020-160525호~16143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60525호~160526호는 민원인이 작성한 신문기사 내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안임. 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공정이용 해당 여부,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시정권고 대상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9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24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54313호~5455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 총 24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o 오진해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3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1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5쪽의 게시자명, 6쪽의 방송사명, 밴드명, 게시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D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다른 입장임. 안전번호 제2020-160526호의 경우에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봄. 그러나 저작물성 판단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검토보고서상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시사보도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 기자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여 창작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특히, 인터넷신문들이 다른 신문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무단 전재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한 현상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무단 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C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임. 해당 안전은 저작물성 문제 보다는 공정 이용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의 경우, 명백하게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영상의 극히 일부를 캡처하여 이미지를 게시한 것이고, 원 기사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안전번호 제2020-160526호의 경우, B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그렇지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언론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임. 이러

한 이유로 2개의 안전 모두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A 위원: 해당 안전의 경우,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는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언론 심의기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져 부결 의견임.
- C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민원인인 기자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의도로 작성된 글에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불쾌하다는 느낌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봄.
- B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동일성유지권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봄. 예를 들어 영화에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할 때 해당 장면에 음악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이용하는데, 복제이기는 하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 현재 어떠한 장면에 어떠한 음악의 일부가 사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창작자와 의논을 하여 영화의 삽입곡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타인이 그대로 전재할 경우 어떠한 의도로 자신의 사진이 쓰여지느냐도 원 저작권자의 인격적인 부분과 관련이 될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C 위원: 하지만 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반 저작물과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B 위원: '▲▲▲▲▲' 기사의 경우는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고 봄.

- C 위원: 민원인이 해당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민원인 자신의 정서적인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이러한 사안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짐.

- B 위원: 본 위원은 C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 D 위원: 해당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임. 먼저, 저작물을 전제했을 때 원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민원인은 '▲▲▲▲'의 기자임. 해당 기사나 사진 등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귀속된다고 일반적으로 내규 규약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저작권자가 누구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두 번째로, 해당 사건의 경우, 기사가 있고 기사 내에 영상 또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길거리에서 연예인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음.

이러한 영상, 어떻게 보면 모션 픽처스, 연속적으로 보여준 사진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성을 크게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영상저작물의 침해라고 보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급심 판례에서 캡처 스틸컷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 다른 쟁점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의 이용이 비즈니

스 모델임. 언론사에서 사진 기사나 이미지 내에 언론사 워터마크를 찍고,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면, 신문사의 이미지 라이선스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어 버림.

- B 위원: 그리고 공정이용이 되려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의 경우는 출처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심의하는데 고려해야 함.

자유게시판 이용자가 마치 직접 촬영하여 게시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도용인 것임. 이것은 단순히 신문윤리위원회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적으로 다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사도 어문저작물로 다루고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 D 위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이슈를 선정해 보면, 저작물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한 것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 상업적인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무단 전제하고 출처 표시 하지 않았을 때의 저작인격권 이슈, 극히 일부를 사용하거나 비평적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에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법원은 연합뉴스의 기사와 이미지를 스포츠신문에서 그대로 가져와 무단 전제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보도에 불과한 것과 저작물성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이론적

으로도 까다롭고 정책적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사안임.

또한 해당 사안이 저작권 침해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도 하나의 이슈임.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사안은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봄.

- 오진해 전문위원: 저의 최종적인 검토 의견은 민원인 작성한 기사 내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만,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B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공정이용의 경우 출처 명시 의무가 있음.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작권법 136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이지만, 출처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138조에 의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음. 두 경우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출처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 만일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가 특히, '▲▲▲▲▲'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으면,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봄.

심의위원회에서는 URL 단위로 심의를 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에 의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내에서 사진만 삭제하기도 어려움.

또한 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저작권 침해라 하더라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C 위원: 참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단속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자들과 함께 기획 기사를 내거나 인터뷰를 하여 기사가 나가면 제가 속한 단체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를 게시함. 해당 신문사의 광고국에서 불법으로 기사를 게시하였으니,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연락이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들이 벌어짐.

안건번호 제2020-160525호의 경우, 출처 표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명백하게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으며, 안건번호 제2020-160526호의 경우는 언론사 대 언론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최승수 분과위원장: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위원님께서서는 각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60525호의 경우, 개인이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한 글로서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를 캡처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출처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안건번호 제2020-160526호의 경우, '▲▲▲▲▲'이 '▲▲▲▲▲'의 게시글을 재인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물 침해가 인정되나, 해당 분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윤리위원회 등의 조직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 간 다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다만, 저작물성 여부 등 법리적 쟁점과 저작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등 정책적 쟁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전체위원회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 160526호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문제, 언론의 자유 제약 등 논쟁이 있는 사안으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160526호는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160526호는 기사 및 영상의 저작자 소재, 해당 기사 및 영상 컷의 저작물성, 저작인격권 침해 이슈, 공정이용 해당 여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 조치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160526호는 전체위원회로 회부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0527호~16143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79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096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21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불법 복제한 영상을 mp4 파일로 제공함. 해당 저작물은 2020. 10. 21.에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 중이며, 고아성, 이솜, 박혜수 등이 출연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양상블'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제2020-161146호는 밴드에서 영화 '양상블'을 mp4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11. 5.에 개봉하였으며, 김승수, 이천희, 김정화 등이 출연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구매 가능함. 밴드명은 '▲▲▲▲▲ ▲▲▲▲▲▲▲▲▲▲'이며, 게시자명은 '▲▲ ▲▲▲▲▲▲▲▲▲▲▲▲▲▲▲▲'임. 해당 밴드의 멤버수는 331명임.

(만화 '기생수'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142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기생수'를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1권부터 8권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일본 '코단샤'에서 1995. 3. 23.에 완결판인 10권까지 출간하였음. 우리나라 '학산문화사'에서 2003. 6. 23.에 애장판을 8권까지 출간함.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100원에 구독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60527호~16143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C,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160527호~161435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0527호~16143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0525호~160526호는 전체위원회로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0-160527호~16143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9쪽부터 2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4313호~5455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최현용